

청주지방법원 2021. 7. 23 선고 2019나1378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래영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신국희

피고, 피항소인 B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21. 6. 4.

판 결 선 고 2021. 7. 23.

제1 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7가단11216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청구확장으로 인하여 생긴 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9,875,404원 및 이 중 11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4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1.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2019. 5. 31.까지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59,875,404원에 대하여 2021. 3.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를 확장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 1) 피고는 원고와의 1, 2차 정산합의 과정에서, 추가공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추가공사를 하였다고 원고를 기망하였고,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5억 3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그 중 1억 1,000만 원을 원고 몰래 I에게 지급한 후 소외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으로 3억 9,300만 원만을 지급받았다고 원고를 기망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기망에 의한 1, 2차 정산합의를 취소한다.
- 2) 원고는 피고의 기망에 의하여 피고와 사이에 1차 정산합의 및 이 사건 대물변제 약정을 하였고, 피고가 위 대물변제 약정에 기하여 원고 소유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를 집행하자 이를 해제하기 위하여 부득이 피고와 사이에 2차 정산합의를 한 후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비채변제로서 그 변제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
- 3) 따라서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총 공사대금 8억 2,300만 원에서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 606,610,000원과 추가 공사비 6,514,596원을 공제한 나머지 209,875,404원(= 823,000,000 - 606,610,000 - 6,514,596)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의 기망행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먼저, 추가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고의 기망행위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감정인 O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 회사와의 공사도급계약 특약사항 제5조 제3항에서는 '허가 도면에 의거 시공을 원칙으로 하되 시공사의 요청에 설계 변경시 건축주와 사전 협의하고 공사비는 증감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고시원 공사를 진행하면서 가설울타리 공사, 가도축조 및 오수관로확인(기존도로 깨기 및 복구) 공사와 같은 추가공사를 진행하였는데 그에 따른 추가공사비가 6,514,596원인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2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와의 1, 2차 정산합의 과정에서 이 사건 고시원 공사를 진행하면서 추가공사를 하지 않았으면서도 3억 2,000만 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하였다고 원고를 기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공사 기성금에 관하여 2012. 10. 29.자 1차 정산합의를 하였다가, 대물변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하여 정산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2차 정산합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② 소외 회사가 하수급업체인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이 사건 고시원 공사가 중단됨에 따라 원고가 직접 피고와 사이에 기성 공사대금을 정산하게 되었는데,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에는 원고와 소외 회사와의 공사도급계약 특약사항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은 내용의 공사비 증감 배제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공사에 따른 공사비를 요구한 것이 원고에 대한 기망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③ 원고와 피고 사이의 1, 2차 정산합의 과정에서 피고가 제출한 공사원가계산서에는 기존 약정내용과 현장투입비가 항목별로 기재되어 있고, 소외 회사도 실정보고를 통하여 원고에게 증가된 공사비와 그 내역을 상세히 보고하였으므로, 건축주인 원고로서는 그 항목의 비교를 통해 증가된

공사비를 확인할 수 있었다.

④ 원고는 소외 회사와의 공사도급계약에 공사비 증감 배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피고와 1, 2차 정산합의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서, 송장 등을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였으면서도 피고가 주장하는 공사대금은 추가 공사대금에 해당하여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내용에 배치된다는 주장을 한 바는 없다.

⑤ 피고는, 원고와 소외 회사와 사이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위 계약에 포함된 공사비 증감 배제 규정에 구속되지 않고 자유로운 내용으로 정산합의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위 공사비 증감 배제 규정은 '시공사의 요청에 따른 설계변경 시' 공사비 증감이 없다는 내용이어서 건축주인 원고의 요청에 따른 설계변경 시 공사비 증감은 가능하므로, 피고가 1, 2차 정산합의 과정에서 원고에게 추가공사비를 요구한 것이 위 공사비 증감 배제 규정에 반드시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나아가, 피고가 I에게 송금한 1억 1,000만 원과 관련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고의 기망행위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소외 회사의 현장소장이던 J의 요청에 따라 소외 회사로부터 기성금으로 받은 1억 1,000만 원을 J이 지정한 I 명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 J이 1차 정산합의 직후인 2012. 11. 7. 원고에게 기성내역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에게 지급된 기성금이 3억 9,300만 원이라고 보고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든 증거, 을 제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K, J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와의 1, 2차 정산합의 과정에서,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5억 300만 원 중 1억 1,000만 원을 원고 몰래 I에게 지급한 후, 원고에게 소외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으로 3억 9,300만 원만을 지급받았다고 이야기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피고가 1차 정산 합의 전 원고에게 제공한 공사원가계산서 중 현장투입비 총계 서류에는 5월 지급된 품명으로 가수금 1억 1,000만 원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1, 2차 정산합의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억 1,000만 원을 누락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② J은 사촌 형인 I의 소개로 원고의 남편 L, 원고측 현장대리인 K 등을 알게 되었고, I의 요청으로 피고를 통해 각종 관리비 및 경비 명목으로 I에게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J은 제1심에서 '당시 I을 통하여 K, M이 1억 1,000만 원을 받는다는 것을 건축주측 L도 알고 있었고, I에게 1억 1,000만 원을 송금할 때는 건축주의 현장대리인이었던 K에게 동의를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③ 피고는 I과 J의 요청과 원고측 현장대리인 K의 동의에 따라 소외 회사로부터 기성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은 5억 300만 원 중 1억 1,000만 원을 I에게 반환하게 된 것이고, 피고가 위 1억 1,000만 원의 반환을 계획하였던 것은 아니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2017. 8.경 비로소 피고가 I에게 1억 1,000만 원을 반환한 것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L은 2013. 5. 3. 소외 회사 및 피고와 사이에 '소외 회사에서 피고를 통하여 I에게 전달한 1억 1,000만 원에 대하여 소외 회사가 일괄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법원 판결에 따라 환입되는 금액을 건축주에게 환입하고, 그 중 10%는 피고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⑤ 피고가 H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원고는 1, 2차 정산합의에 따라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여서 공사대금 지급채무를 면하였다고 주장하였을 뿐 피고가 I에게 지급한 1억 1,000만 원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였으므로 이를 반환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하지 않았다.

⑥ L은 2012. 12. 6. 피고의 대표이사 N와의 통화에서 '어쨌든 개네가 응수를 한다니까 돌려받기가 어려울 것이고, 내 돈 부분에 대해서 횡령 건이 있다고 하면 I이 그 부분 인정해 주고 돌려주겠다. 근데 저 사람들 중간에 물타기 하고 있는거 느끼고 왔어'라고 이야기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차 정산합의가 있기 전 이미 I이 피고를 통하여 지급받은 1억 1,000만 원에 대하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⑦ 원고는 N를 업무상횡령방조죄, 사기죄, 제3자뇌물교부죄로 고소하였는데, N는 2014. 10. 16. 업무상횡령방조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2017. 11. 30.

제3자뇌물교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각하처분을, 2018. 5. 31. 사기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각 받았다.

⑧ 원고는 2012. 10. 26. 1차 정산합의 이후 대물변제를 위하여 매매계약서까지 작성하였다가 그 이행이 무산되자 2013. 4. 26. 2 차 정산합의를 통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금액을 1억 5,000만원으로 결정하였고, 그 이후인 2013. 4. 29. 위 금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으며, 피고는 위 금원을 지급받은 이후에 비로소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취하하였다.

2) 비채변제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와의 1, 2차 정산합의 과정에서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임병렬, 판사 김환권, 판사 전보람